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안)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

1.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제도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과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이 2016년 1월 27일 통합(통합법명칭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)되었으며,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.

3. 이에, 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,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일 시 : '16. 6. 14(화), 15:00~17:00
- 장 소 : 과천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층 중강당
- 설명내용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(안)
- 참석대상 : 안전인증업체, 소비자단체, 협회 등 관련기관

붙임 : 설명회개최 참석 안내문. 끝.



국가기술표준원장



수신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제조업체, 수입업체, 한국소비자협회, 한국소비자연맹 회장, (사)소비자공익네트워
크 회장, 녹색소비자연대, (사)소비자시민모임 회장, (사)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

공업연구원 과장 2016. 6. 2.
안광희 **정민화**

협조자

시행 전기통신제품안전과-1266 (2016. 6. 2.) 접수

우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(국가기술표준원) / <http://www.kats.go.kr>

전화번호 043-870-5441 팩스번호 043-870-5676 / khan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